

의안 번호	2005	[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]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제출일자: 2022. 9. 30.(금)
- 제출자: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: 2022. 9. 30.(금)
- 위원회 심사일자: 2022. 10. 13.(목)

2. 제정이유

-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아동 급식 지원 대상,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지원대상(안 제3조)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 -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 - 보호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급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
- 지원 방법(안 제4조)
 -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
 -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, 도시락 지원 등
- 지원 안내 및 신청, 대상자, 이의신청 등(안 제5조 ~ 제8조)
- 아동급식위원회 및 아동급식지킴이 운영 등(안 제9조 ~ 제10조)
- 지도·감독(안 제11조)

4. 근거법규

-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
-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36조

5. 검토의견

-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